

『Strategy 21』 발간 규정

제정 2016. 3. 10.

제1조(목적)

- ①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국가안보, 국방정책, 군사전략, 국가 해양전략, 지역 해양안보, 한국 해군의 해군력 발전전략에 도움과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한다.
- ② 학술지라 함은 『Strategy 21』 을 말한다.

제2조(발간 주제) 학술지의 발간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연구
- ②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
- ③ 군사전략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는 학술 연구
- ④ 국가 해양전략과 지역 해양안보에 관한 연구
- ⑤ 한국 해군의 해군력 발전 전략에 도움과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

제3조(구성) 학술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공모 논문
- ② 특별 논문 ('기획특집' 필요시)
- ③ 부록 (필요시)

제4조(발행인, 편집위원장, 편집위원) 학술지의 발행인,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발행인: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
- ② 편집위원장: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또는 지명된 편집위원
- ③ 편집위원: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이 지명하는 학자 및 전문가
- ④ 편집간사: 지정된 편집위원 또는 지정된 학자 및 전문가

제5조(편집위원회)

- ① 『Strategy 21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편집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
 2. 기획특집 주제의 설정 및 집필자 위촉에 관한 사항
 3.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
 4. 부록의 선정에 관한 사항
 5. 논문 평가 결과 심의 및 출판에 관한 사항
 6. 기타 발간과 관련된 사항
- ③ 편집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고려한다.

1.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
 2. 외교[한보]통일 정책, 전략 및 해군력 운용 분야의 연구와 경험이 탁월한 학자 및 전문가
 3. 기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이 편집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자 및 전문가
- ④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.
 2. 「Strategy 21」 편집위원장은 통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이 되나, 필요 시 소장이 별도의 편집위원 또는 학자 및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.
 3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수시 소집하되, 최소 각 호당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불참시 <첨부 1>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발간 언어) 「Strategy 21」 발간 언어는 국문(국문논문)과 영어(영문논문)로 한다. 국문과 영문논문은 번역문 없이 발간한다.

제7조(발간 횟수 및 발간 예정일) 「Strategy 21」은 연 2회(6월, 12월) 발간한다. 발간 일은 매년 6월 1일, 12월 1일로 한다.

제8조(크기 및 분량) 학술지의 크기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크기는 크라운판(175mm×250mm)으로 한다.
- ② 분량은 각주, 표, 그림이 포함된 참고문헌(초록과 키워드는 제외) 합하여 A4 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영문요약(A4 용지 2매 내외)을 반드시 첨부한다. 국문논문은 영문요약을 영문논문은 국문요약을 첨부한다.
- ③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준수한다.

제10조(편집)

- ①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<첨부 2> "Strategy 21 논문 공모, 심사 및 확정"을 따른다.
- ② 학술지 편집 요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1. 공모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
 2. 기획특집 논문에 관한 사항
 3. 부록에 관한 사항
 4. 원고집필 요령에 관한 사항
 5. 편집 및 출판 절차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